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37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김종민 · 김영호 · 한창민

김준형 · 최혁진 · 조계원

손솔 · 김승원 · 윤종오

전종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상황에서 정주인구에 대응하여 지역의 통계적 인구를 늘리는 의미는 있으나, 인프라의 부족 및 교육환경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생활인구 확대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음.

따라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的 개념을 도입하여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아울러 추진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전국적 의미에서의 지역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이에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제7호,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15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지역과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생활인구”를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이하 “생활인구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생활인구”를 “생활인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생활인구”를 “생활인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활인구를”을 “생활인구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인구”를 “생활인구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관계인구</u>”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지역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생 략)</p> <p>② 시·군·구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p> <p>7.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u>생활인구</u> 확대에 관한 사항</p> <p>8. · 9. (생 략)</p> <p>③ ~ ⑦ (생 략)</p>	<p>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p> <p><u>생활인구 및 관계인구(이하 “생활인구등”이라 한다)-----</u></p> <p>8. · 9. (현행과 같음)</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제7조(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제7조(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p>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생략) ② 시·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제15조에 따른 시·도 <u>생활인구</u> 확대에 관한 사항</p> <p>7. · 8. (생략)</p> <p>③ ~ ⑦ (생략)</p> <p>제15조(<u>생활인구</u>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u>생활인구를</u>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생활인구</u>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p>	<p>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생활인구등</u> 7. · 8.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p> <p>제15조(<u>생활인구등</u>의 확대 지원)</p> <p>① ----- ----- <u>생활인구등을</u> -----. ② ----- ----- <u>생활인구등</u> -----.</p>
--	---